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서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평생교육국	3,843,135	4,452,413	609,279	15.9%
교육정책과	3,539,828	4,137,691	597,863	16.9%
평생교육과	23,090	29,835	6,745	29.2%
청소년정책과	95,017	99,688	4,670	4.9%
친환경급식과	185,199	185,199	0	0.0%

〈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476,089	3,476,089	4,085,368	609,279	609,279	17.5%	17.5%
지방세 전출	1,395,930	1,395,930	1,736,031	340,100	340,100	24.4%	24.4%
담배소비세 전출	261,068	261,068	279,450	18,383	18,383	7.0%	7.0%
지방교육세 전출	1,730,527	1,730,527	1,968,541	238,014	238,014	13.8%	13.8%
교육경비보조(조례상전출금)	54,376	54,376	55,742	1,366	1,366	2.5%	2.5%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0	0	1,835	1,835	1,835	순증	순증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0	0	4,000	4,000	4,000	순증	순증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0	0	910	910	910	순증	순증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4,920	24,920	29,009	4,089	4,089	16.4%	16.4%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0	0	533	533	533	순증	순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268	9,268	9,316	48	48	0.5%	0.5%
국고보조금 반환		0	0	0	0	순증	순증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물망 돌봄확대와 안전 투자를 통한 안심도시 구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평생교육국은 11개 사업에서 6,092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한 4조 853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4,760억 9천만원 대비 17.5%(6,092억 7천 9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기정 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476,089	3,476,089	4,085,368	609,279	609,279	17.5%	17.5%
지방세 전출	1,395,930	1,395,930	1,736,031	340,100	340,100	24.4%	24.4%
담배소비세 전출	261,068	261,068	279,450	18,383	18,383	7.0%	7.0%
지방교육세 전출	1,730,527	1,730,527	1,968,541	238,014	238,014	13.8%	13.8%
교육경비보조(조례상전출금)	54,376	54,376	55,742	1,366	1,366	2.5%	2.5%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0	0	1,835	1,835	1,835	순증	순증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0	0	4,000	4,000	4,000	순증	순증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0	0	910	910	910	순증	순증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4,920	24,920	29,009	4,089	4,089	16.4%	16.4%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0	0	533	533	533	순증	순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268	9,268	9,316	48	48	0.5%	0.5%
국고보조금 반환		0	0	0	0	순증	순증

가. 법정전출금(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법정전출금은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법령은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100분 45, 특별시세 총액의 100의 10을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금번 법정전출금은 2020회계연도 시세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세는 기정예산(1조3,959억3천만원) 대비 24.4%(5,964억9천7백만원) 증액하고,
 -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2,610억6천8백만원) 대비 7.0%(183억8천3백만원)를 증액하며,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1조7,305억2천7백만원) 대비 13.8%(2,380억1천4백만원) 증액하여, 총 5,964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법정전출금	3,387,525	3,984,022	596,497	17.6%
지방세 전출	1,395,930	1,736,031	340,100	24.4%
담배소비세 전출	261,068	279,450	18,383	7.0%
지방교육세 전출	1,730,527	1,968,541	238,014	13.8%

- 법정전출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20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지난연도 세입(보통세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에 따른 2020회계연도의 법정전출금은 3조 8,955억원 규모이며, 2020회계연도 교부액(3조 6,757억원) 중 2019회계연도의 정산분(3,767억원)을 제외한 2020회계연도 정산분은 5,965억원 규모임.

〈 2020회계연도 법정전출금 대상의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세목	2020년		지난연도 시세징수액	징수액합계	법정전출금 대상여부	적용 비율	법정전출금
	부과액	징수액					
합 계							3,895,514
1)보통세	17,480,639	17,272,117	129,717	17,401,835			1,740,183
취득세	7,493,213	7,470,731	7,330	7,478,061	대상	10%	747,806
레저세	22,924	22,924	0	22,924	대상	10%	2,292
담배소비세	605,200	605,200	0	605,200	대상	10%	60,520
지방소비세	1,942,810	1,870,307	0	1,870,307			0
5%분	1,118,546	1,118,546	0	1,118,546	대상	10%	111,855
6%분취득세	725,331	725,331	0	725,331	대상	10%	72,533
주민세	602,009	594,603	5,682	600,285			0
균등분	59,742	53,120	5,148	58,268	대상	10%	5,827
지방소득세	6,226,330	6,107,644	54,796	6,162,440	대상	10%	616,244
자동차세	1,229,352	1,168,621	62,443	1,231,064	대상	10%	123,106
2)담배소비세	605,200	605,200	0	605,200	대상	45%	272,340
3)지방교육세	1,815,315	1,786,304	24,482	1,810,785	대상	100%	1,810,785
4)지방소비세6%분 지방교육세	0	72,206	0	72,206	대상	100%	72,206

〈 2020회계연도 월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억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36,757	0	2,692	2,420	2,427	2,322	2,786	3,000	3,943	3,340	7,046	1,994	4,786
지방세	15,976	0	1,158	1,280	1,196	1,513	1,835	1,384	1,205	1,971	1,565	893	1,975
담배소비세	2,541	0	200	200	244	187	218	254	197	261	273	233	275
지방교육세	18,241	0	1,334	939	987	622	733	1,362	2,542	1,108	5,208	869	2,536

〈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백만원)

		3년 평균	3년합계	2018	2019	2020
소 계		3,468,120	10,404,360	3,370,581	3,358,037	3,675,742
지방세	본예산	1,514,306	4,542,917	1,230,170	1,267,922	1,400,083
	추경			211,941	235,300	197,501
담배소비세	본예산	260,726	782,179	280,972	254,329	253,957
	추경			216	-7,413	117
지방교육세	본예산	1,693,088	5,079,264	1,458,184	1,492,338	1,644,977
	추경			189,097	115,563	179,106
2019회계연도 정산분						376,724

-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동일해야 하나, 각각 다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경 중 평생교육국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비교 〉

(단위:천원)

	소계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서울시 법정전출금	596,497,366	340,100,477	18,382,753	238,014,136
교육청 법정이전수입	596,810,366	340,413,477	18,382,753	238,014,136
차액	313,000	313,000	0	0

- 이는 교육청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을 서울시의 지방세 전출금과 합산하여 '시도세전입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은 이와 같은 합산을 교육부의 방침과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 따른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 발표) 중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통해 "일반사업 전환분(3.6조)과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교육청인 한시적 세입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을 시세이전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 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의 편성 기준 〉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51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지방교육세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전입금
	지난년도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난년도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2022년 12월 31까지 유효)

출처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87p 발췌

- 국가는 지방분권에 따른 시·도전환사업에 대해 3년간(2020~2022)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서울시의 보통세 전출금과 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은 '시도전환사업 보전금'만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출금과 전입금의 차이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비특별회계의 '시도세전입금'의 산출기초 〉

(장)이전수입 (관)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항)법정이전수입 (목)시도세전입금

(단위 : 천원)

사업내역	1차추경예산		기정예산액	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340,413,477	1,431,797,109	1,772,210,586
1. 시도세전입금		340,413,477	1,431,797,109	1,772,210,586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40,413,477	1,431,797,109	1,772,210,586
가. 시도세전입금	1,736,030,586,000원 - <기정>1,395,930,109,000원=	340,100,477		
나.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36,180,000,000원 - <기정>35,867,000,000원=	313,000		

출처 : 2021회계연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발췌

- 조례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전체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교육경비보조(조례상전출금)

- 본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입학생 증가 및 연간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입학준비금의 추가분담금 13억 6천 6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55,742,029	54,376,360	1,365,669	2.5%
비법정전출금	55,742,029	54,376,360	1,365,669	2.5%

- 본 증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라 해외 유학생의 유입 등으로 인한 학생 수의 변동으로 교육청의 추가분담 요청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1만 5천명이 증가하여 45억 5천 5백만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분담비율(서울시30%:교육청50%:자치구 20%)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은 13억 6천 6백만원 규모임.

〈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자의 증가 현황 〉

(단위: 명, 천원)

	자치구	학생 수(명)			추가 소요액(천원)			
		기존학생수	추가학생수	최종학생수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합계
1	강남구	9,830	2,680	12,510	406,422	243,853	162,569	812,844
2	강동구	6,964	637	7,601	96,601	57,961	38,641	193,203
3	강북구	3,641	196	3,837	29,723	17,834	11,890	59,447
4	강서구	7,705	952	8,657	144,371	86,622	57,749	288,742
5	관악구	4,797	678	5,475	102,819	61,691	41,128	205,638
6	광진구	4,977	214	5,191	32,453	19,472	12,982	64,907
7	구로구	5,447	632	6,079	95,843	57,506	38,338	191,687
8	금천구	2,624	76	2,700	11,526	6,915	4,611	23,052
9	노원구	9,928	2,609	12,537	395,655	237,393	158,262	791,310
10	도봉구	4,561	41	4,602	6,217	3,731	2,488	12,436
11	동대문구	4,198	309	4,507	46,860	28,116	18,744	93,720
12	동작구	4,964	24	4,988	3,639	2,184	1,456	7,279
13	마포구	4,846	85	4,931	12,890	7,734	5,157	25,781
14	서대문구	4,076	26	4,102	3,943	2,366	1,578	7,887
15	서초구	7,386	73	7,459	11,071	6,642	4,429	22,142
16	성동구	3,338	47	3,385	7,127	4,276	2,852	14,255
17	성북구	6,366	48	6,414	7,279	4,367	2,912	14,558
18	송파구	10,243	110	10,353	16,681	10,009	6,673	33,363
19	양천구	9,577	219	9,796	33,211	19,927	13,285	66,423
20	영등포구	4,273	29	4,302	4,398	2,639	1,760	8,797
21	용산구	2,284	661	2,945	100,241	60,144	40,097	200,482
22	은평구	6,620	1,115	7,735	169,090	101,454	67,636	338,180
23	종로구	1,815	2,127	3,942	322,559	193,536	129,024	645,119
24	중구	1,715	1,396	3,111	211,704	127,022	84,682	423,408
25	중랑구	4,523	25	4,548	3,792	2,275	1,517	7,584
	계		15,009	151,707	2,276,115	1,365,669	10,460	4,552,244

※ 1인당 입학준비금은 기존과 동일한 30만원으로 책정, 제로페이수수료1.1%포함

- 다만, 서울시의 추경금액과 교육청의 추경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교육청의 추가요청에 따라 입학준비금 예산(13억 6,56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3억 6천 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 입학준비금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664,090	12,623,270	14,287,360
가. 마을결합중점학교	1,000,000,000원 - <기정>500,000,000원=	500,000		
나. 마을결합형학교공간시설개선지원	800,000,000원=	800,000		
다. 입학준비금지원	12,487,360,000원 - <기정>12,123,270,000원=	364,090		

출처 :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4P 발췌

〈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중 입학준비금 분담현황 〉

(단위:천원)

		합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합계(추경 후)		46,176,786	13,853,029	23,088,388	9,235,369
분담비용	기정	41,624,542	12,487,360	20,812,273	8,324,909
	추정	4,552,244	1,365,669	2,276,115	910,460
분담비율			기정 30.0% 추경 30.0%	기정 50.0% 추경 50.0%	기정 20.0% 추경 20.0%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교육청은 입학준비금을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와 협의한 규모로 예산을 확정(121억 2,327만원)하였으나, 서울시는 협의 규모보다 증액하여 당초예산이 확정(124억 8,736만원)되어, 교육청은 '서울시의 당초예산과 교육청의 당초예산을 일치'시키려 그 차액(3억 6,409만원)을 교육청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가 금번에 증액하는 입학준비금 예산은 교육청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입학준비금 관련 서울시-교육청간 협의금액 및 편성액 내역 〉

(단위:천원)

	협의금액	당초예산	차액
입학준비금	12,123,270	12,487,360	364,090

- 또한, 교육청은 입학준비금 대상의 추가에 따른 교육청의 분담비용인 22억 7천 6백만원(총 소요액 45억 5,224만원 중 50%)을 교육청의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본 예산의 증액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교육청은 ‘교육청의 분담비용을 예산의 전용을 통해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시의 입학준비금으로 전입된 예산은 ‘성립전 예산’을 통해 우선 집행하고, 차후 별도의 추경이 있을 경우 간주처리 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성립전 예산 : 예산 성립 후 편성되지 않은 예산(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집행이 긴급할 때, 우선 집행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의 신속성을 확보는 예외적인 예산제도.

-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교부한 경우, 사용할 금액을 전액 교부받은 경우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서울시가 편성·교부할 예산은 국가의 예산도 아니며, 입학준비금 중 일부이고, 차기 추경이 있을지 예단할 수 없는바, 교육청이 본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은 법령에 위배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평생교육국이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소한 교육청이 지원받을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러한 회계 간 예산 불일치 문제는 교육청의 예산 집행상의 문제이며, 평생교육국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입학준비금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특별교육경비를 편성해야 하나, 본 추경은 부족한 입학준비금만을 반영하여 특별교육경비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현재 특별교육경비는 소진된 상태로 예산편성 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액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일반·특별교육경비 보조의 비율을 감안한 추경 필요액 〉

(단위:천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일반·특별경비 비율 감안(안)		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계	54,376,360	100.0%	55,742,029	100.0%	55,893,770	100.0%	1,517,410
일반교육경비	48,938,724	90.0%	50,304,393	90.2%	50,304,393	90.0%	1,365,669
특별교육경비	5,437,636	10.0%	5,437,636	9.8%	5,589,377	10.0%	151,741

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Seoul Learn)’ 구축”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사업의 ‘전달방식과 내용’의 관계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은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18억 3천 5백만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과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835,368	0	1,835,368	순증
전산개발비	843,368	0	843,368	순증
자산및물품취득비	992,000	0	992,000	순증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계	4,000,000	0	4,000,000	순증
사무관리비	4,000,000	0	4,000,000	순증

- 본 사업들은 공정성(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집중지원), 다양성(다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구축), 혁신성(에듀테크 접목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교육플랫폼 ‘가칭 Seoul Learn’ 구축(안) (평생교육국 추경 관련 제출자료)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목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등으로 시작하여 청소년, 시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 시스템 구축 계획(평생교육과-4747, 2021.5.17.)

〈 교육플랫폼 구축 산출기초 〉

(단위:천원)

구분	총계	교육플랫폼 구축			감리용역
		시스템 개발	솔루션 도입	서버 도입	
예산액	1,900	800	892	100	108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학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초·중·고 교과분야(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전문자격 분야(게임원화, 프로그래밍(JAVA, C++), 포토샵, 전산세무, 오토캐드 등), 창의성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유튜브 영상 만들기, 디지털 드로잉, 창의로봇 교육과정, 코딩수학 등) 등의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에 있음.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계획(평생교육과-5064, 2021.5.28.)

〈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의 산출기초 〉

(단위:천원)

사업명 / 품명	산출가격	
	단가	금액
합 계		4,000,000
과정별 온라인콘텐츠 운영		3,400,000
◦ 초등교육 콘텐츠 제공(5개월) (1만명)	100	1,000,000
◦ 중등교육 콘텐츠 제공(5개월) (1만명)	100	1,000,000
◦ 고등교육 콘텐츠 제공(5개월) (1만명)	100	1,000,000
◦ 전문자격 강좌수강(5개월) (1만명)	40	400,000
사업진단 및 만족도조사		100,000
◦ 평가지표 개발	40,000	40,000
◦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60,000	60,000
콘텐츠 제작 및 개발		500,000
융합·창의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 (5개)	100,000	500,000

-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58억 3천만원, 2022년도에는 117억원, 2023년도에는 97억원 등 총 272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 향후 3년간 예산집행 계획 〉

(단위:백만원)

내 용	계	2021	2022	2023
계	27,230	5,830	11,700	9,700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3,830	1,830	2,000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23,400	4,000	9,700	9,700

출처 : 교육플랫폼 ‘가칭 Seoul Learn’ 구축(안)

- 다만, 위의 2개 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 서울시의 사무인지 여부, 본 사업의 효율성, 중복성, 공공성, 차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행정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정규 교과과정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될 수 있거나 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진방식일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따라 교육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시는 제도적·행정적·재정적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교육플랫폼 구축 및 교육컨텐츠 제공은 방과후수업의 ‘보육·보호·교육’ 등의 제공이 아닌 교육만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일반행정의 사무범위인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과 학예 중 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이 제공하는 교육이 교과과정이 아닌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교과과정의 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직접수행’은 평생교육국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무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 필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범위를 초월한 사무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조례의 개정(직접 사무 수행)하거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인 ‘지원’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의3(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정책과·친환경급식과를 둔다.

④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 14. (생략)

-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교육 콘텐츠를 임차하기 위해 대규모 (금년 40억원, 향후 매년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예산규모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임차 콘텐츠 제공이 바우처보다 더 효율적인지 여부, ‘공교육 정상화’에 미칠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사항으로 EBS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본 사업들과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임차 강의영상 제공보다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반드시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단순 녹화 강의 또는 일방적 온라인 강의를 벗어나 쌍방향 강의 등을 위해 9억 5천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털'과 중복사업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학습 포털의 고도화

-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대면 실시간 강좌 등) 추진 등 7억 2천 4백만원
-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문자발송, 회원인증 비용 등 2억 2천 7백만원

〈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운영계획 발췌 〉

1) 사이버강좌 운영계획

- 사이버 강좌 운영 : 임차콘텐츠 + 공동활용콘텐츠 + 지식충전소
 - 임차콘텐츠 : 인문학, 취업/자격증, 외국어, 가족/건강, 정보/컴퓨터, **아동/청소년 등 7개 분야 30~60분 내외 강좌**
 - 공동활용콘텐츠 : 금융교육, 생활취미, 아동학대예방, 인권교육, 전기기사, 건강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49개 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은행, 서울대, 서울산업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9개 기관 제공
 - 지식충전소 : 5~30분 내외의 최신이슈 중심의 단편 콘텐츠 제공
 - ▶ 9개분야 :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시민교육, 아동/청소년, 이슈/트렌드, 인문/감성, 창의/혁신, 에너지교육, 서울자유시민대학 등

〈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콘텐츠 보유 및 임차내역 〉

구분	사이버 콘텐츠 이용현황	
	유상임차	무상임차
2018년	○ 온라인 강좌 : 465 과정 ○ 지식콘텐츠 : 819편	○ 온라인강좌 : 289개 과정
2019년	○ 온라인 강좌 : 557과정 ○ 지식콘텐츠 : 819편	○ 온라인강좌 : 320개 과정
2020년	○ 온라인 강좌 : 720과정 ○ 지식콘텐츠 : 846편	○ 온라인강좌 : 307개 과정 ○ 지식콘텐츠 : 46편

출처 : 평생교육국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한편, 평생교육국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여,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협의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반려한바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는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은 ‘협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협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협의대상 아님)하였고,
 -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에 대해서는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과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일 사업내용을 지속 지원할 경우 협의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고,
 - 본 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본 사업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시 목적으로 교과목 선행학습 등을 위해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 교육부의 ‘K-에듀’ 등 ‘국가사업을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교육플랫폼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 〉

검토결과	반려(협의대상 아님)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시범사업_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u>단년도(1년) 내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사업 내용을 변경</u>(민간 학원 수강료 지원 → 시 자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직접 제공 등)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1차년도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협의운용지침 상 협의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업내용을 지속 지원할 경우 협의 대상에 해당, 다만 입시 목적의 주요 교과목 선행학습 등을 위해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 (본사업_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시민 전체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협의운용지침 상 협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협의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협의대상 아님)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향후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등 중앙정부 유사 사업 등과 중복 투자 최소화 필요

라.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 본 사업은 관악 영어·창의마을의 기능을 전환하여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9억 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910,000	0	910,000	순증
시설비	910,000	0	910,000	순증

- 평생교육국은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평생학습 거점이 필요하고, 이에 영어·창의마을을 평생학습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본 추경으로 금년 중(7~9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1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악 평생학습공간의 시설현황 및 조성개요 〉

- 소 재 지 : 관악구 낙성대로 7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부지면적 (20,391㎡), 건물면적 (7,040㎡)
- 건물현황 : 대강당, 소강당, 영화관, 도서관, 강의실(23), 식당 등
- 현재용도 : 공실(2020.8월 운영 종료 이후 건물 유지관리 중)
- 시설성격 : 교육연구시설(건축법), 교양시설-영어문화체험관(공원녹지법)
- 사업방법 : 시설개보수
- 추진방법 : 설계용역(수의계약) 후 시공공사
- 사업기간 : 2021년 7월~12월(설계 ~ 준공)
- 사 업 비 : 910백만원 (설계용역비 12백만원, 시설개보수 공사비 898백만원)

○ 다만, 신규 편성하여 제출된 시설비는 설계비와 시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금년 설계 후 시설공사를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진행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한바,

- 관악영어마을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되어 있는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차년도에 나머지 예산(시설비)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예산의 예외적 사용(명사·사고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 영어·창의마을 운영” 중 관악캠ป์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예산편성 산출기초	
사무관리비	○수유캠프 시설안전관리실태 점검자문 수당1,800,000원	= 1,800천원
	○수유캠프 기능전환 및 활용방안 자문단 운영5,000,000원	= 5,000천원
	○관악캠프 유지관리170,400,000원	= 170,400천원
공공운영비	○관악캠프 유지관리60,000,000원	= 6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유캠프 운영 업무추진976,000원	= 976천원

〈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의 산출기초 〉

○ 공사비 산출내역

- 공사종별 : 개보수(증축이나 대수선이 아닌 시설개보수로 구조, 외관, 면적 변경없음)
- 공사범위 : 방수, 바닥, 등
- 공 사 비 : m²당 235천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개보수공사비) 참고)
- 공 사 비 : 3,822m² × 235천원 = 897,798천원

※ 전체 면적(7,040m²)중 지하1층, 1층을 중점적으로 시설 개보수

< 위치도 >



< 전 경 >



- 한편, 본 사업은 11월부터 시설개보수가 진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편성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를 활용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바, 사용하지 못할 예산(관악 영어·창의마을의 유지보수 비용)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바.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익이 급감한 청소년시설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40억 8천 9백만원(민간위탁금 38억 4천 1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29,009,210	24,919,882	4,089,328	16.4%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0	0.0%
공공운영비	313,402	313,402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0	0.0%
기타보상금	56,000	56,000	0	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0,000	150,000	0	0.0%
민간위탁금	26,768,796	22,927,011	3,841,785	16.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3,212	655,669	247,543	37.8%
민간위탁사업비	611,000	611,000	0	0.0%
자산및물품취득비	52,000	52,000	0	0.0%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금을 조기 교부하였으나, 청소년시설(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의 자금 고갈이 예상(자립형시설은 7월경, 지원형시설은 9월경)됨에 따라 재원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

'20.12.5~'21.1.19(2.5단계)	'21.1.20~2.15(2.5단계)	'21.2.16 ~ (2단계)
· 휴관(긴급돌봄 등 유지)	· 청소년 대상, 非체육활동 · 정원의 30% 범위 내 운영	· 성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 정원의 30% 범위 내 운영

〈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및 사업수입 증감 현황 〉

(단위:천원)

	2019년	2020년	증감	증감률
이용인원	11,338명	3,777명	7,561명	△66.7%
사업수입	407억원	97억원	310억원	△76.2%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청소년시설의 자금보유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자금보유현황(2021.4.30.)				월평균 소요액	비고 (평균 소진시기)	
	계	자체자금	보조금	선수금			
계	8,529	1,926	6,237	366	2,471		
센터	자립형(14)	4,546	584	3,632	330	1,642	7월
	지원형(7)	3,186	545	2,605	36	720	9월
유스호스텔(1)	797	797*	-	-	109		

* 유스호스텔 자체자금(797백만원)은 시설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

- 본 추경을 통한 지원은 5~9월중 적자발생이 예상되는 자립형 시설(13개소)과 하이서울유스호스텔로 한정하여 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 목적사업 운영비 등)를 3차에 걸쳐 지원할 예정에 있음.

〈 청소년시설 손실보전액 지원방법 〉

- (1차) 손실보전 금액(추경예산)의 30% 우선 지원 : 1,227백만원(5~6월분)
- (2차) 시설 손실보전 신청 → 서류 검토 후 지원(월별, 40%) : 1,635백만원
- 서류 검증을 위해, 필요 시 시설 현장점검 병행
- (3차) 손실금에 대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회계검증 실시 후 차액 지급(30%)
- 시설별 손실지원 신청자료(5~9월 필요경비 및 체불·체납 내역 등) 검증
- 시설별 보유자금 및 적자발생 내역 확인

○ 다만, 성동구청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동청소년센터의 손실액은 1억 5천 3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2억 4천 7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을 편성하고 있는바, 다른 청소년센터와 같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 이상으로 편성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의 손실보전액 산출 〉

(단위:천원)

시설명	총보유자금 (①) (위탁운영비잔액 포함)	5~9월 손실분(②)			손실보전액 (③=②-①)	비 고 (손실 미보전 시 자금소진시기)
		부족액 (수입-지출)	수입액	지출액		
계	4,685,973	(8,775,301)	4,021,562	12,796,863	4,089,328	
청소년센터 (13)	4,685,973	(8,199,389)	3,650,562	11,849,951	3,513,416	
강북	433,215	(665,040)	217,035	882,075	231,825	8월 중
구로	453,326	(480,249)	146,633	626,882	26,923	9월 말
금천	554,576	(658,016)	19,610	677,626	103,440	9월 중
노원	89,800	(878,383)	785,015	1,663,398	788,583	5월 중
동대문	408,855	(517,314)	23,696	541,010	108,459	9월 초
마포	361,813	(576,762)	411,731	988,492	214,949	8월 초

시설명	총보유자금 (①) (위탁운영비잔액 포함)	5~9월 손실분(②)			손실보전액 (③=②-①)	비고 (손실 미보전 시 자금소진시기)
		부족액 (수입-지출)	수입액	지출액		
망우	338,974	(499,741)	424,000	923,741	160,767	8월 중
목동	253,200	(856,833)	319,767	1,176,600	603,633	6월 중
문래	241,588	(581,885)	530,000	1,111,885	340,297	7월 초
서대문	438,035	(615,922)	135,309	751,231	177,887	8월 말
성동	502,410	(655,990)	238,500	894,490	153,580	9월 초
수서	290,449	(574,711)	362,167	936,877	284,262	7월 중
은평	319,732	(638,542)	37,100	675,642	318,810	7월 중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796,508*	(575,912)	371,000	946,912	575,912*	5월 중

* 유스호스텔 자체자금(797백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5~9월 손실분 전액 보전

- 또한, 본 증액은 5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분(40억 8천 9백만원)을 추계한 것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손실(51억 3백만원)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평생교육국은 손실액 감소를 위한 청소년시설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이용자 급감에 따라 불용 처리 가능성이 높은 사업(사용료감면손실 보전, 제로페이손실 보전 등)을 활용할 계획에 있으나, 해당 불용예산 규모로는 청소년시설의 대규모 적자를 보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시설의 자구노력 이행 : 업무추진비 절감, 직원 퇴사에 따른 공석 미충원, 셔틀버스 미운영, 청소용역 미체결, 탄력근무제 대체를 통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단축근무, 연차소진 등

※ 평생교육국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센터의 손실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다음항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할 계획에 있음

- 2020회계연도에 ‘민간위탁금’ 내 불용 처리한 항목(사용료감면손실 보전, 제로페이손실 보전,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유스데이, 여름방학 특별진로캠프, 할인손실금 등)은 금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세부 항목을 운영 손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중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예산 산출기초
민간위탁금	○ 시립청소년센터(21개소) 위탁운영비 지원 = 16,618,931천원
	○ 특성화사업비 = 1,472,000천원
	○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 271,600천원
	○ 유스데이 = 232,800천원
	○ 할인손실금 = 312,000천원
	○ 사용료감면손실금 보전 = 780,000천원
	○ 수상안전요원 배치지원금 = 701,680천원
	○ 여름방학특별진로캠프 = 64,000천원
	○ 제로페이 손실금 지원 = 1,079,000천원

- 금번 추경에 있어 청소년시설의 4/4분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추가재원 확보 및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시설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손실분을 상계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립청소년센터의 총 손실보전 소요액(추정) 〉

총 손실보전 소요액(~12월)	추경 손실보전 편성액	추가 필요금액
91억 9천 2백만원	40억 8천 9백만원	51억 3백만원

< 청소년시설별 손실 및 손실보전 필요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보유자금 (위탁운영비 포함)	손실현황			손실보전 필요(손실액-보유자금)	
		월평균	손실액(~9월)	손실액(~12월)	9월 손실까지 보전 시	12월 손실까지 보전 시
계	10,576	(2,471)	(13,096)	(19,768)	4,089	9,192
자립형 시설	5,202	(1,642)	(8,704)	(13,138)	3,513	7,936
강 북	433	(125)	(665)	(1,004)	232	571
구 로	453	(91)	(480)	(725)	27	272
금 천	555	(124)	(658)	(993)	103	439
노 원	90	(166)	(878)	(1,326)	789	1,236
동 대문	409	(98)	(517)	(781)	108	372
마 포	362	(109)	(577)	(871)	215	509
망 우	339	(94)	(500)	(754)	161	415
목 동	253	(162)	(857)	(1,293)	604	1040
문 래	242	(110)	(582)	(878)	340	637
서 대문	438	(116)	(616)	(930)	178	492
성 동	502	(124)	(656)	(990)	154	488
성 북	516	(95)	(504)	(761)	0	245
수 서	290	(108)	(575)	(867)	284	577
은 평	320	(120)	(639)	(964)	319	644
지원형 시설	5,374	(720)	(3,816)	(5,761)	0	387
강 동	838	(105)	(555)	(838)	0	0
광 진	759	(95)	(503)	(759)	0	0
보 라 매	720	(90)	(477)	(720)	0	0
서 울	737	(114)	(604)	(912)	0	175
중 랑	1,071	(134)	(710)	(1,071)	0	0
창 동	604	(94)	(498)	(752)	0	148
화 곡	645	(89)	(470)	(709)	0	64
유스호스텔	797	(109)	(576)	(869)	576	869
하이서울	797**	(109)	(576)	(869)	576	869

* 지원형 시설은 시 위탁운영비 지원 비중이 높고, 수익형 사업의 비중이 낮아 9월까지의 손실 발생 없이 운영이 가능함.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보유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유자금 총액에서 제외

사.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 본 사업은 위기청소년과 정서행동 특성검사 후 상담증가로 상담 대기기간 (최소 3일 ~ 최장 2개월)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사 채용과 상담시설 확충을 위하여 5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533,000	0	533,000	순증
사무관리비	80,000	0	80,000	순증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3,000	0	333,000	순증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0	120,000	순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계획 〉

- 사업내용 : 전문상담사 채용(최대 2배, 102명) 및 상담시설 확충
- 지원계획
 - 상담사 인건비 지원 : 37,000천원(시비 27,750천원, 구비 9,250천원, 75:25)
 - 상담시설 확충비 지원 : 5백만원(1인 기준)

상담사 채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자치구 지역여건 및 수요 고려) ○ 지원규모 : 총 102명(자치구별 1~3명)
상담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형태 : 개인면접 상담실 ○ 시설면적 : 12㎡(개인상담실 평균 면적) ○ 소요비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시설 설치(3,500천원) 상담테이블, 노트북 등(1,500천원)

- ※ 2021년 추경편성(6개월)(24명 기준) : 564백만원
 - 市 : 인건비 333백만원 / 시설비 120백만원
 - 區 : 인건비 111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 및 대기일수〉

(단위:명, 건, 일)

연번	구 분	전체인력 (센터)(명)	상담실적(년)		평균실적(1인당)		상담대기 (일)
			상담인원(명)	서비스지원(건)	상담인원(명)	서비스지원(건)	
	계	295(120)	22,095	708,647	74.9	2,402.1	20.2
1	서울시	27(18)	2,333	76,840	86.4	2,845.9	3~7
2	종로구	10(4)	681	14,188	68.1	1,418.8	10
3	용산구	11(5)	547	24,763	49.7	2,251.1	6
4	성동구	10(4)	705	15,499	70.5	1,549.9	7
5	광진구	9(3)	905	21,769	100.5	2,418.7	14
6	동대문구	12(5)	585	14,808	48.7	1,234.0	5
7	중랑구	10(4)	1,054	18,564	105.4	1,856.4	30
8	성북구	12(5)	1,504	56,322	125.3	4,693.5	40
9	강북구	11(5)	978	25,284	88.9	2,298.5	14
10	도봉구	12(5)	665	35,373	55.4	2,947.7	15
11	노원구	11(3)	611	29,448	55.5	2,677.0	30
12	은평구	13(5)	953	27,430	73.3	2,110.0	21
13	서대문구	12(5)	828	20,846	69.0	1,737.1	7
14	마포구	12(4)	814	20,317	67.8	1,693.0	14
15	양천구	12(4)	696	23,000	58.0	1,916.6	30
16	강서구	11(3)	1,154	19,668	104.9	1,788.0	21
17	구로구	11(4)	901	35,705	81.9	3,245.9	14
18	금천구	12(4)	711	22,702	59.2	1,891.8	14
19	영등포구	9(5)	1,056	28,290	117.3	3,143.3	7
20	동작구	10(4)	843	44,296	84.3	4,429.6	10
21	관악구	9(2)	566	14,438	62.8	1,604.2	20
22	서초구	14(6)	904	30,747	64.5	2,196.2	60
23	강남구	13(5)	633	30,738	48.6	2,364.4	60
24	송파구	12(4)	764	31,302	63.6	2,608.5	30
25	강동구	10(4)	704	26,310	70.4	2,631.0	20

※ 중구에는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 본 사업은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전문상담사 채용과 근무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

- 평생교육국은 각 자치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과도한 상담대기 기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사 24명(각 자치구별 1~2명)을 채용하려는 것이며,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직무분석을 위해 ‘사무관리비(8천만원)’를 편성하고,
 - 전문상담사 24명의 6개월분(2021년 7월~12월) 인건비 3억 3천 3백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며, 상담실을 조성(방음시설, 테이블, pc 등) 하기 위해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시민과 청소년의 편의를 위하여 상담대기 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겠으나, 직무 분석 후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선 채용 후 직무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본 추경에서는 직무분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직무분석 후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외 예산을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의 수요조사 결과*는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총 17명으로, 공간부족으로 추가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자치구는 3개구로 조사되었으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청소년정책과 9493, 2021.5.24) 중
 ‘붙임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요조사’ 발취

- 평생교육국은 각 자치구별 1인(총 24명)을 채용하여 근무공간을 조성할 예산(총 1억 2천만원)을 일괄 편성하고, 수요 파악 후에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직무분석 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 후 집행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경을 편성할 수 없는 자치구는 2개소(용산구, 동대문구)로 조사되었으나, 평생교육국은 이런 상황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24명분의 인건비를 모두 편성하였는바, 추경 미편성 자치구는 지원을 할 수 없고, 그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한바, 사업 시작 시부터 불용처리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예산 조정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서울시 75%, 자치구 25%)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평생교육국은 자치구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인건비의 75%와 시설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여 자치구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 사업은 국·시비 분담사업으로 국가와 서울시의 부담을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예산을 요구하여 국·시비 분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시가 정한 일방적인 분담비율은 자치구의 예산편성을 제약할 수도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사업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시민의 불편(상담 대기기간의 장기화)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인건비의 시·구 분담을 국·시비 분담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분석 후 적정 인력배치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본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전문상담사 배치관련 자치구 수요조사 중 불가의견 발취 〉

연번	구 분	현 상담인력	자치구 의견	
			추가소요인력	비 고
3	용산구	5	-	추경 어려움
4	성동구	4	-	공간부족 및 수요없음
6	동대문구	5	-	예산편성 어려움
16	강서구	3	-	상담실 확보 및 추가인력 근무공간 부족
21	관악구	2	1	공간 절대적 부족
22	서초구	6	1	◦ 전일제, 상담실 설치필요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멘토링을 제공하여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4천 8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9,316,299	9,268,299	48,000	0.5%
민간위탁금	9,316,299	9,268,299	48,000	0.5%

- 평생교육국은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학업 중단 이후 다양한 형태로 진로욕구가 발현되어,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전문가 멘토(56명 내외,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인 멘토(20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에 있으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멘토단’으로 위촉하고,
 - 전문가 멘토는 분기별 1회, 일반인 멘토는 학업형, 진업형, 비행형, 무업형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월 2회 멘토링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전문가는 회당 15만원, 일반인은 회당 1만 3천원(자원봉사자 활동비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 2022년부터는 일반인 멘토를 4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멘토단 연차별 확대계획’ 〉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84백만원	48백만원	159백만원	159백만원	159백만원	159백만원
멘토 그룹	153백만원	17백만원 56명	34백만원 56명	34백만원 56명	34백만원 56명	34백만원 56명
자원봉사자	531백만원	31백만원 200명	125백만원 400명	125백만원 400명	125백만원 400명	125백만원 400명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소외감, 차별감, 박탈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멘토링 운영으로 정서적 안정감 등을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 등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멘토의 수, 활동현황, 1인당 멘토링 횟수 등을 본 사업의 성과로 제출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실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이자가 1만 2천원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3억 7백만원)가 배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국3:시7)에 따라 시비(7억 1천 6백만원)편성하여 집행 후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245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1만2천원)를 반납하려는 것임.

〈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소요예산			비고
소계	국비(30%)	시비(70%)	
1,024,000	307,200	716,800	※ '18. 9월 추경 확보

※ 세부 산출 기초

- 산출기초 : 25,662개(공급수)×제공횟수 21회×1,900원
= 1,023,913,800원(시비와 국비 7:3매칭)
- 공 급 수 : 지원대상 학생수(25,264명)+학교별 1개 보존식(398개)
- 제공횟수 : 추경확보 후 9월~12월까지 주1-2회 제공(학사일정, 과일수확량 등 감안)

〈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비 정산 내역 〉

(단위:천원)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015,831	304,749	711,082	8,169	2,451	5,718

- 본 사업을 계획·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의 2018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2018년 1월에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에 통보하였고, 서울시는 본 사업에 공모하고,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어 추경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회성 사업으로 종료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2017.12.28.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본 사업은 과일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냉장시설이 필요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우유, 급식재료 보관 등으로 추가적인 냉장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에 더해 과도한 조기도착, 요일별 학생 수의 편차로 인한 수급불균형, 남은 과일간식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음.
- 평생교육국은 '많이 주면 좋다'라는 식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국가 또는 타 시·도의 정책·사업을 서울시에 도입할 경우 서울시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서울시 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